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46 발의연월일: 2021. 12. 22.

발 의 자: 윤재갑·김승남·김주영

서영교・설 훈・신정훈

소병철 • 위성곤 • 유준병

이개호・홍문표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 2,000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쌀 소비량 감소 추세로 수요량 대비 27만톤이 과잉 생산되어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10월 5일 22만 7,212원이었던 쌀값은 11월 25일 기준 21만 1,992원으로 1만 5,000원 이상 하락하는 등 산지 쌀값은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기재부 등 정부는 현재 산지 쌀값은 작황이 좋지 않았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쌀 시장격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그러나 쌀 자급률이 2015년 101%에서 2020년 92.8%로 감소하고, 20 21년 9월 기준 국산 쌀 재고(15만톤)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양곡의 매입여부, 매입물량 및 매입시기 등을 결정할 때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관리심의위원회를 두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16조의3 신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미곡을 매입할 때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쌀값 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 이상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양곡관리심의위원회) 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여부, 매입물량 및 매입시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양곡관리정책 관계공무원
- 2.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양곡관리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수있다.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 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 다)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할 때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 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하여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 산량 이상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 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 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 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 ⑤ ~ ⑦ (생 략) <신 설>

되는 경우

-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기 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제16조의3(양곡관리심의위원회)
 - 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여부, 매입물량 및 매입시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 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 1. 양곡관리정책 관계공무원
 - 2.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 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

<u>는 사람</u>

- 3. 그 밖에 양곡관리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